

의안번호	제 239 호
의결연월일	2005. 8. 30

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. 8. 22. 전태수 의원외 2
 - 나. 회 부 일 자 : 2005. 8. 22
 - 다. 상 정 일 자 : 2005. 8. 29
- 제125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제1차 운영위원회

2. 제안설명요지(대표발의자 : 전태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5. 8. 5 개정 공포되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현실에 맞게 조정 인상됨에 따라
-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관련 별표6의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가 시·군의회 의원이 1일 7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인상됨.
- 따라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제3조 회기수당 지급기준을 1일 70,000원에서 1일 100,000원으로 인상함(안 제3조)

3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박홍돈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의원에게 회기에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에 1일 70,000원에서 100,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
- 회기수당을 현실에 맞게 지급함으로써 지방의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.

4. 질의 · 답변요지

- 생략

5. 토론요지

-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